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40
----------	----

제출일자 : 2003. 1.17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세입이 없는 것을 감안 지속적인 투자 사업이 불필요함으로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편성 조치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조례를 폐지함.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5조 2항(특별회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시행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결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